



광화문1번가 정책 제안: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정책

(사)오픈넷

전화: 02)581-1643 Fax: 02)581-1642

I. 통신심의 대상 정보의 한정화 및 심의의 효율화

1. 심의 근거 및 위험성

- 현행 방통위 설치법 제21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(이하 "방심위")의 통신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'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'으로 규정
- 이에 따라 방심위는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삭제·차단의 시정요구를 할 권한을 가짐
- 자체적으로 심의규정을 제정하여 '과도한 욕설, 저속한 언어' '혐오감' '기타 사회질서 위반, 사회적 혼란 야기' 등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준으로 국민의 표현물을 심의하고 삭제·차단 결정을 하고 있음. 특히 '기타 사회질서 위반'과 같은 기준은 정치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큼

2. 심의제도의 위헌성

- 행정기관이 '유해성'이나 '건전성' 등을 기준으로 표현물을 심의하는 제도는 위헌적이며,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방심위의 통신심의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

3. 개선 방향

-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폐지하고 심의 대상 정보를 '불법성이 명백한 정보'로 구체화·명확화하고, 이러한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에 주력해야 함.
- 또한 행정기관의 표현물 심의는 위헌성이 높으므로, 방심위를 민간기구화하

거나 최소한 위원 구성이나 조직 운영에 있어 정치성을 배제하고 다양한 구성 및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필요

<끝>